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269

제안연월일: 2024. 8.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6월 11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6월 20일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24년 6월 28일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6.) 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 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 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생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②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				
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u><단</u>	<u>다만,</u>			
<u>서 신설></u>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			
	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			
	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u>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u>			
	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			
	<u>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